

1. 개정이유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·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함)이 개정(공포 2024. 12. 3, 시행 2025. 6. 4.)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 반영 및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 제23조의2(시설의 평가)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시설의 평가 주체·평가 시기·평가 기준·평가 방법 및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(안 제10조의3)

나. ‘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) ①여성가족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,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년마다(매 2년)”을 “3년마다(매 3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3(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) ①여성가족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,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.
제13조(규제의 재검토)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9조의6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·퇴소의 절차 및 기준 2. 제10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	제13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 3년마다(매 3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
<u>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</u> 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